

2007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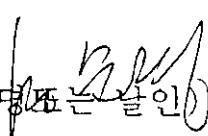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 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제안자 : 양순경 의원 (6명 또는 11인)  
  
외 4인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의안발의서명서

|     |     |  |
|-----|-----|--|
|     |     |  |
| 이수경 | 이수경 |  |
| 성명증 | 성명증 |  |
| 경영섭 | 경영섭 |  |
| 강현승 | 강현승 |  |
|     |     |  |

##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1166 |
|------|------|

제안연월일 : 2007. 9.  
제 안 자 : 양순경의원외 4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)

- 제1조(목적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를 ⇒ 제62조로 개정

붙임 1.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끝.

##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b>제1조(목적)</b><br/>          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<b>제1조(목적)</b><br/>           ..... 제62조 .....</p> |